



# 항공사 대상 출입국 요건 안내서

미합중국  
여행 관련 필수 서류  
2023년 3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목차

## 서문

### 제1부:

#### 미국 입국 시 필수 서류

- I. 항공편 이용 시
  - A. 미국 시민권자
  - B. 미국 거주자
  - C. 방문객
- II. 육상/해상 교통편 이용 시
  - A. 미국 시민권자
  - B. 미국 거주자
  - C. 방문객
- III. 기타 사항
  - A. 비자 면제 프로그램
  - B. 괌-북마리아나 제도 지역 비자 면제 프로그램
  - C. 중국 국민 북마리아나 제도 임시 입국
  - D. 특정 외국 여권의 유효성
  - E. 인근 섬 목록
  - F. 전자 비자 갱신 시스템(EVUS)
  - G. 자동 재허가
  - H. 전자 양식 I-94

### 제2부:

#### 국제선 항공편 변경

### 제3부:

#### 미국 여행 서류 예시

### 제4부:

#### 비자분류

### 제5부:

####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규정 위반 행위 일람표

### 제6부:

#### 신속 참조용 차트

### 제7부:

#### 승객 정보 사전 확인 시스템

### 제8부:

####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 서문

미합중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방문객 등의 여부를 막론하고 신분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여행객은 본인의 여행 목적에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합중국 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교통편을 제공하는 항공사 역시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승객을 미국에 입국시킨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항공사 대상 출입국 요건 안내서는 여행업체 종사자를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미국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필수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본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출입국 관련 서류 확인 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간행물에서 다룬 주제들에 관한 항공사 직원의 교육훈련을 요청하려면 항공사 연락 프로그램 이메일 주소 [CLP@cbp.dhs.gov](mailto:CLP@cbp.dhs.gov)를 통해 해당 요청을 전달해 주십시오.

당면한 탑승 문제에 관한 문의 사항을 돕기 위해 지역 항공사 연락 그룹(RCLG)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된 초점은 해외 항공사들이 미국 입국과 여행 서류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RCLG에서는 여행자가 제출하는 여행 서류의 유효성 또는 입국 가능 여부와 관련된 항공사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일단 유효성 또는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되면 RCLG는 승객의 탑승 가능 여부를 권고할 것입니다. 탑승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공사에서 내려야 합니다. 지역 항공사 연락 그룹은 마이애미, 뉴욕 및 호놀룰루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공항 내에서 이민 연락관 프로그램(IAP) 또는 공동 보안 프로그램(JSP)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IAP 또는 JSP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CLG는 연중 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됩니다. 본 서비스는 전 세계의 미국행 항공편 항공사에게 제공됩니다.

RCLG	서비스 지역	전화 번호
호놀룰루	아시아, 환태평양	808-237-4632
마이애미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305-874-5444
뉴욕	유럽, 아프리카, 중동	718-487-5231

또한, 항공사 직원은 갱신된 내용 및 일반정보를 다음 두 곳의 미국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도록 권장합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www.cbp.gov](http://www.cbp.gov)과 미국 국무부 영사과 [www.travel.state.gov](http://www.travel.state.gov)입니다. 공공 정보 요청은 CBP 정보센터 <https://help.cbp.gov/app/home>에서 문의하십시오.



# 제1부:

미국 입국 시 필수 서류





## I. 항공편 이용 시

서반구 여행 정책(WHTI)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북/남미, 카리브해 지역, 버뮤다 출입국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여권 또는 소지자의 신분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승인된 서류가 있어야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여행 서류는 유효해야 하며 만기가 지나서는 안 됩니다.

### A.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미국 여권
- 긴급 미국 여권
- Nexus 카드 (사전 입국심사 장소가 있는 캐나다 공항에 한함)

특수 신분의 미국 시민권자:

1. 현역 군인 신분인 미국 시민권자는 공무 여행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권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2. 외항 선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을 나타내는 미국 외항 선원 카드와 첨부된 공무 여행 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권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3. 외국 항구 또는 장소에 닿지 않고 **미합중국과 미합중국의 소유지 및 영토 사이**를 직항으로 여행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국민은 여권 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지 및 관할지는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스웨인즈섬, 북마리아나 제도를 말합니다.

**B. 미국 거주자 -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카드(양식 I-551)
- 원본 양식 I-797에 의해 첨부된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 카드 양식 I-551, 카드의 유효성이 연장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치 통지서
- 이민 비자 및 여권
- 여권 또는 양식 I-94에 찍힌 임시 거주 스탬프 (“ADIT”)
- 재입국 허가서(양식 I-327)
- 난민 여행 증명서(양식 I-571)
- 임시 보호 신분 증명서(양식 I-512T)
- 임시 입국 허가서, 양식 I-512 또는 EAD 콤보 카드
- 미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행 증명서/링컨 보딩 포일 (Lincoln Boarding Foil)

**예외 사항**

**해외에서 영주권자에게 출생한 자녀가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 또는 국민인 모친이 임시 해외 방문 중에 출생했다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미합중국으로의 입국 신청은 출생한 지 2년 안에 해야 하고 자녀 출생 후 처음으로 미합중국으로 돌아오는 자녀는 영주권자로 재입국 신청하는 부모와 동반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하지만 부모가 이민자로서 첫 입국을 하기 전에** 동반하는 부모에게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녀가 여권 및 출생증명서가 있는 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공식 명령서 및 군인 신분증을** 소지한 미국 영주권자인 미군.

**C. 방문객/환승 승객 -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및 비자(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이 아닌 경우)

**비자 면제 방문자:****캐나다 국민**

- 여권 필수. E, K 및 V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되는 예외를 제외한 비자 면제요건 분류(제4부 참조).
- **Nexus 카드** (사전 입국심사 장소가 있는 캐나다 공항에 한함)

**버뮤다 거주민**

- 여권 필수. E, K 및 V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되는 예외를 제외한 비자 면제 요건 분류(제IV부 참조).

**멕시코 국민**

- 여권 및 비자 또는
- 여권 및 국경 통과 카드(BCC)

**미합중국에 영구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며 외교관 또는 공무원권을 소지한 멕시코 외교관 및 동반 가족 구성원은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에 대해 비자 또는 국경 통과 카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본인 없이 가족만 여행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내 NATO 연합군 사령부 소속으로 공식 명령서와 NATO 신분증이 있는 **NATO 직원**은 여권 및 비자 요건이 면제됩니다.

**바하마 국민 또는 바하마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바하마 내 CBP가 승객의 미국 입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탑승 전에 해당 승객을 검사한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케이맨 제도 또는 터크스카이코스 제도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승객이 케이맨 제도 또는 터크스카이코스 제도에서 바로 입국하며 법원에서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빙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령 버진 제도를 직항으로 여행하는 영국령 버진 제도의 영국 국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VI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대상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여행객:** 특정 국가의 시민들은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체류를 위해 비자 없이 미합중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 신분증, 신분증, 영사관 증명서, 시민증, 귀화 증명 또는 기타 국내용 신분증이나 인구 동태 조사표 등은 여행 증명이 아니므로 이러한 서류의 소지자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에 관한 최신 정보는 CDC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dex.html> \*\*\*

## II. 육상/해상 교통편 이용 시\*

### A.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미국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 여행자 증명 카드(NEXUS, SENTRI, FAST 또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
-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강화된 운전 면허증
- 16세 미만의 아동들 또는 학교, 종교 단체 또는 기타 청소년 단체와 여행하는 19세 미만의 아동들은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시민권 증명서만 제시하면 됩니다. 출생증명서는 원본, 사본 또는 등본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 신분의 미국 시민권자:

- 공무 여행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을 나타내는 미국 외항 선원 카드를 소지한 **외항 선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없이 첨부된 공무 여행 증명서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외국 항구 또는 장소에 닿지 않고 미합중국과 **미합중국의** 소유지 및 **영토 사이를 직항으로 여행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국민은 여권 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지 및 관할지는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스웨인즈섬, 북마리아나 제도를 말합니다.
- 강화된 부족 카드
- 사진이 부착된 미국 원주민 신분증

\* 서반구에서 출발하는 선박편을 이용한 입국 시, 동반구에서 출발하는 선박편을 이용한 입국 시에는 1절 “항공편 이용 시”의 서류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B. 미국 거주자 -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카드(양식 I-551)
- 원본 양식 I-797에 의해 첨부된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 카드 양식 I-551, 카드의 유효성이 연장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치 통지서
- 이민 비자 및 여권
- 여권 또는 양식 I-94에 찍힌 임시 거주 스탬프 (“ADIT”)
- 재입국 허가서(양식 I-327)
- 난민 여행 증명서(양식 I-571)
- 임시 보호 신분증명서(양식 I-512T)
- 임시 입국 허가서, 양식 I-512 또는 EAD 콤보 카드
- 난민 여행 증명서(양식 I-766)
- 미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행 증명서/링컨 보딩 포일 (Lincoln Boarding Foil)

**예외 사항**

자녀가 미합중국의 영주권자인 모친이 임시 해외 방문 중에 출생했다면,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는 이민 비자를 제시하지 않고 신규 이민자로 탑승 또는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합중국으로의 입국 신청은 출생 후 2년 안에 해야 하고 자녀 출생 후 처음으로 미합중국으로 돌아오는 자녀는 영주권자로 재입국 신청하는 부모와 동반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하지만 부모가 이민자로서 첫 입국을 하기 전에** 동반하는 부모에게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녀가 여권 및 출생증명서가 있는 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공식 명령서 및 군인 신분증을 소지한 영주권자인 미군.**

**C. 방문객/환승 승객 -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및 비자(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이 아닌 경우)

**비자 면제 방문자:**

**캐나다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 E, K 및 V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되는 예외를 제외한 비자 면제 요건 분류(제IV부 참조)
- 캐나다 국적 증명서

- NEXUS, FAST, SENTRI
- 원주민 북부 지역 발전 카드
-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강화된 운전 면허증
- 16세 미만의 아동들 또는 학교, 종교 단체 또는 기타 청소년 단체와 여행하는 19세 미만의 아동들은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시민권 증명서만 제시하면 됩니다. 출생증명서는 원본, 사본 또는 등본이 될 수 있습니다.

### 버뮤다 거주민

- 여권 필수. E, K 및 V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되는 예외를 제외한 비자 면제 요건 분류(제4부 참조).

### 멕시코 국민

- 여권 및 비자 또는 국경 통과 카드(육상 이동)
- 여권 및 비자 또는 국경 통과 카드(해상 이동)

**미합중국에 영구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며 외교관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멕시코 외교관 및 동반 가족 구성원은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에 대해 비자 또는 국경 통과 카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본인 없이 가족만 여행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내 NATO 연합군 사령부 소속으로 공식 명령서와 NATO 신분증이 있는 NATO 직원은 여권 및 비자 요건이 면제됩니다.**

**바하마 국민 또는 바하마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바하마 내 CBP가 승객의 미국 입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탑승 전에 해당 승객을 검사한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케이맨 제도 또는 터크스카이코스 제도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승객이 케이맨 제도 또는 터크스카이코스 제도에서 바로 입국하며 법원에서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빙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으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만 바로 여행하는 경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VI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은 VWP 적용 대상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여행객:** 특정 국가의 시민은 먼저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체류를 위해 미합중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해외여행에 관한 최신 정보는 CDC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dex.html> \*\*\*



### III. 기타 사항

#### A.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WP는 특정 국가의 시민이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체류를 위해 미합중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은 반드시 전자 여권이어야 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사업, 관광 또는 환승 승객으로 90일 이내의 임시 방문인 경우
- 계약 항공사의 항공 또는 해상 교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경우
- 전자적으로 확인된 ESTA를 소지한 경우 ESTA 승인의 종이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귀국편/연결편 항공권/선박권 소지
- 여행자가 미국의 주변 관할지역 또는 인접 섬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여행이 해당 지역이나 섬에서 종료될 수 없음

#### \*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적자들이 미국행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탑승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웹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40개 국가의 국민들은 ESTA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esta.cbp.dhs.gov> 를 참조하십시오.

## 비자 면제 프로그램 - 적용 국가

그리스 <sup>4</sup>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브루나이	이탈리아
노르웨이	산마리노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체코 공화국
대만 <sup>5</sup>	스위스	칠레
대한민국	스페인	크로아티아
덴마크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독일 <sup>3</sup>	슬로베니아 <sup>1</sup>	폴란드
라트비아	싱가포르	프랑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호주
모나코	에스토니아	
몰타	영국 <sup>2</sup>	

## 비자 면제 프로그램(계속)

1.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슬로베니아 시민과 국민은 붉은색 표지의 슬로베니아 여권만 미합중국 입국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VWP 자격이 되기 위해 영국 여권을 제시하는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채널 제도 및 맨섬의 무제한 영구 거주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 국적은 반드시 “영국 시민”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독일의 임시 및 긴급 여권(Kinderpass)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근거한 미국 입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bp.gov/contact>에서 확인하십시오.
4. VWP로 여행하는 경우, 그리스 경찰에서 발급한 그리스 전자 여권만 유효합니다. 유포피아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그리스 거주자는 VWP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5. 오직 개인 식별 번호가 명시된 대만 전자여권만 VWP 적용을 받습니다.

VWP 국가의 임시 및 긴급 여권은 전자여권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자여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VWP 긴급 및 임시 여권은 VWP에 따라 미합중국으로 여행이 불가합니다.

**B. 괌-북마리아나 제도(G-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

GCVWP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비자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 G-CNMI VWP 계약 항공사의 여행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
-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로 직항 여행하는 경우
- 사업 및 단순 여행 목적의 방문객으로 45일 이내의 입국일만 필요한 경우
- 출국일이 확정되고 입국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은 왕복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 양식 I-736 및 양식 I-94를 작성 및 서명한 경우
- 다음 해당 국가 중 하나의 국민이고 해당 국가에서 발행된 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입니다:

나우루	말레이시아	일본
뉴질랜드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
대만**	싱가포르	호주
대한민국	영국	홍콩*

**\*‘영국 재외 국민’ 이라고 표시된 영국 여권을 소지한 이전의 영국 식민지인 홍콩의 시민이나 특별행정지역(SAR) 여행 서류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여행 서류는 반드시 홍콩 신분증을 동반해야 합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만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1) 여행 시작지가 대만이고 대만에서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CNMI)로 직항편을 이용하는 경우.
- 2) 대만의 국민 신분증과 대만의 외무부에서 발급한 재입국 허가가 포함된 유효한 대만 여권을 소지한 경우.

### C. 중국 국민 북마리아나 제도 임시 입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개별적인 재량으로 CNMI로 임시 여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요구사항:

자격이 되는 비(非) 이민자 국민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CNMI로 수송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항공사는 반드시:

- 괌-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이미 가입되어야 합니다.
- 여행자가 CNMI 전용 임시 여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BP는 유효한 미국 비자가 없는 비이민 외국인을 탑승시킨 항공사에 대해 INA 273조에 따라 해당 항공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는 해당 항공사가 괌-CNMI 비자 면제 협정에 서명하고 해당 외국인이 INA 212(a)(7)(B)(i)(II) 이외의 사유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사가 추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방문자 자격 요구사항:

임시 입국 자격이 되려면 CNMI로 여행하기 위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각 비(非) 이민자 외국인은 반드시: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어야 하고(마카오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오직 CNMI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기간은 1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 CNMI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은 환불 불가 및 양도 불가에 확정된 출발 날짜가 표시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고;
- 외국 목적지에서 도착하고 출발해야 하며;
- 전에 CNMI를 포함해 미합중국으로 입국이 금지되거나 추방된 적이 없어야 하며;
- CNMI를 포함해 미합중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며;
- 전에 미국 B1/B2, 상용/관광 비자가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하며;
- 작성된 괌-CNMI 비자 면제 정보 전자 양식의 인쇄본을 소지해야 하며(CBP 양식 I-736);
-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ICAO 규정을 준수한 기계 판독형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시 여행 허가서는 CNMI에 국한되어 있고 미합중국 내의 다른 지역 또는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제도, 미국령 사모아 및 스웨인즈섬을 포함한 미합중국 소유지 및 영토에 여행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권한으로 여행하는 방문객은 현지에서 채용되거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괌 및 또는 CNMI로 임시 여행  
연방 등록 고시(FRN) 2019-18841에 공시된 대로 2019년 10월 3  
일부터 러시아 연방 국민은 재량적 임시 입국 정책에 따라 무비자로 괌 및/  
또는 CNMI를 여행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러시아 연방 국민은 괌 및/또는  
CNMI를 여행하려면 적절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 D. 특정 외국 여권의 유효성

## 6개월 규칙

미국 입국 방문객들은 미국 내의 예정된 체류 기간보다 6개월 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아래 국가 목록에서 여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 신청을 하는 여행객은 6개월 요건에서 면제되고 여권에 표시된 만료일까지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들은 적어도 예정된 체류 기간보다 6개월 더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가봉	버마	우즈베키스탄
가이아나	버뮤다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그레나다	벨기에	이집트
그루지아	벨리즈	이탈리아
그리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
기니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불가리아	자메이카
네덜란드	브라질	짐바브웨
네팔	사우디 아라비아	체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칠레
뉴질랜드	세르비아	카타르
니카라과(모든 여권 해당)	세이셸	캐나다
대만	세인트루시아	코소보
대한민국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코스타리카
덴마크	세인트키츠 네비스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수리남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스리랑카	크로아티아
독일	스웨덴	키프로스
라트비아	스위스	태국
러시아	스페인	터키
레바논	슬로바키아	투발루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튀니지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파나마
리투아니아	아루바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마다가스카르	아르헨티나	파푸아 뉴기니
마카오	아이슬란드	팔라우
말레이시아	아이티	페루
모리셔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모리타니아	안도라	폴란드
모잠비크	안티구아 바부다	프랑스
몬테네그로	앙골라	피지
몰디브	앤티리스	핀란드
몰타	에스토니아	필리핀
몽골	에티오피아	헝가리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엘살바도르	호주
바베이도스	영국	홍콩(신분증명서 및 여권)
바티칸(교황청)	오스트리아	
바하마	우루과이	

6개월 규정 국가들의 가장 최신 목록은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40309.html> 을 방문하십시오.

## E. 인근 섬 목록

과들루프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그레나다	세인트 피에르
도미니카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마르티니크	세인트키츠 네비스
마리 갈랑트	아루바
몬세라트	아이티
미클롱	앙귈라
바베이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부다	자메이카
바하마	케이맨 제도
버뮤다	쿠바*
보네르	큐라소
사바	터크스카이코스 제도
세인트 마틴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바르텔레미	

\* 쿠바는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항상 인접 도서국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참고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F. 전자 비자 갱신 시스템(EVUS)

EVUS는 10년짜리 B1/B2, B1 또는 B2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자들이 미합중국으로의 그들의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본 생체 정보를 갱신하는 데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여행객은 유효한 비자 이외에 미합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EVUS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각 EVUS 등록은 여행객들에게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비상 연락처, 여권 정보, 생체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EVUS를 요구받는 여행객들은 탑승권을 받고 미합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bp.gov/EVUS](http://www.cbp.gov/EVUS) 에서 확인하십시오.

## G. 자동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그리고 동반 배우자 및/또는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
-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미국을 벗어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체류한 경우
- 배서한 I-94 양식 또는 만료되지 않은 첫 입국 또는 체류 연장 기간을 나타내는 I-94 전자 양식 인쇄본을 소지한 경우
- 여권을 소지한 경우
- 해외 체류 중 신규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방문자 신분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방문자 신분을 유지한 경우(22 CFR 41.112(d))

F와 J 분류의 비자를 소지한 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비자 자동 재허가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근 섬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쿠바 제외)
-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미국을 벗어나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근 섬에서 체류한 경우
- 자격인증서, F-1을 위한 I-20 양식 또는 J-1을 위한 DS-2019 양식을 소지한 경우
- 배서한 I-94 양식 또는 만료되지 않은 첫 입국 또는 체류 연장 기간을 나타내는 전자 양식 I-94 인쇄본을 소지한 경우
- 여권을 소지한 경우
- 해외 체류 중 신규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방문자 신분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방문자 신분을 유지한 경우(22 CFR 41.112(d))

전자 양식 I-94 인쇄물은 재허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 비자 재허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H. 전자 양식 I-94

CBP는 항공 및 해상, 그리고 2021년 5월부터는 육상 환경에서 전자 양식 I-94를 생성합니다. 항공, 해상 및 육상 여행자에게 종이 양식 I-94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착 즉시 그들의 I-94를 <https://i94.cbp.dhs.gov/i94>에서 또는 링크를 통해 **CBP 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 <https://www.cbp.gov/about/mobile-apps-directory/cbpone>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I-94 인쇄본은 종이 양식 I-94와 동일합니다.

### Most Recent I-94 Results

 For: DARRYL TIMOTHY WETTLAUFER

---

**Most Recent I-94**

Admission (I-94) Record Number : 77101100002  
 Most Recent Date of Entry: 2022 February 17  
 Class of Admission : L1A  
 Admit Until Date : 02/18/2028  
 Details provided on the I-94 information form:

Last Surname : [REDACTED]  
 First (Given) Name : [REDACTED]  
 Birth Date : [REDACTED]  
 Document Number : [REDACTED]  
 Country of Citizenship : Canada

GET THIS TRAVELLER'S TRAVEL HISTORY

← PREVIOUS
PRINT



# 제2부:

국제선 항공편 변경



## II. 국제선 항공편 변경

국제선 항공편 변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상 급유 착륙, 기상 관련 착륙(악천후), 기계 관련 착륙, 기내 질병 또는 테러리스트 관련 사건을 포함한 기타 비상 착륙 또는 긴급 상황.

국제선 항공편이 예정된 목적지 외에 미국 목적지로 변경이 될 때, 해당 목적지의 CBP 관리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적합한 이해 관계자와의 조율은 승객들이 4 시간 이상을 기내에 머물러야 하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항구별 연락처 정보가 필요하다면 CBP.gov <https://www.cbp.gov/contact/ports>에 있습니다.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없이 모든 승객이 탑승한 채로 승객 또는 수하물이 추가되거나 추방되지 않고 항공사가 사전에 100% 사전 승객 정보(API)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적 문제로 착륙 중인 항공기의 승무원 교대와 기내 서비스 제공은 허용됩니다. 예정된 기술적 급유 착륙은 항공사가 100% 미만의 API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항공사는 완전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은 모든 여행객을 그들의 수하물을 포함해 전면적인 CBP 절차를 밟게 해야 합니다. 항공사가 이미 API를 CBP로 전송했다면,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긴급사태와 마찬가지로 소통은 성공적이고 적절한 해결의 비결입니다. CBP는 항공사와 공항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정된 연락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책은 주요 위치에 있는 CBP 관리 공무원이고 그들은 주7일, 하루 24 시간 근무합니다. 이러한 연락책을 통해 CBP는 비행 지연, 결항, 기내 비상사태 및 변경에 관한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9-Sep/CBP-Memo-Carriers-Flight-Diversion-20190516-seal-508.pdf>에 있습니다.



# 제3부:

미국 여행 서류 예시

## 제3부



## 제3부: 미국 여행 서류

미국 여권.....	26-27
미국 긴급 여권 .....	27
미국 여권 카드 .....	28
군인 신분증.....	29
미국 외항 선원증.....	30
강화된 운전 면허증 .....	30
강화된 부족 카드 .....	30
글로벌 엔트리 카드.....	31
SENTRI 카드 .....	31
NEXUS 카드 .....	31
영주권자 카드.....	32
조치 통지서.....	33
ADIT 스탬프.....	34
이민 비자.....	35
재입국 허가서 .....	36
난민 여행 증명서.....	37
새로운 양식 I-512T .....	38
취업 허가증.....	40-41
임시 입국 허가서.....	42
여행 증명서 .....	43
링컨 보딩 포일(Lincoln Boarding Foil) .....	44
링컨 방문 비자 .....	45
미국 국경 통과 카드 .....	46
UN 통행증 .....	47

## 미국 여권

미국 국무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 여권’으로 간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을 발급합니다. 칩은 여권의 뒷면 표지에 내장되어 있고 인쇄된 신원정보 페이지와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외교관 여권(검은색 표지), 공무 여권(적갈색 표지), 군용 여권(회색 표지), 긴급 여권(자색 표지) 및 여행자 여권(파란색 표지)을 발급합니다.



차세대 여권

# 미국 여권



전자 여권



긴급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여권 카드는 캐나다, 멕시코, 버뮤다 및 대부분의 카리브해 지역에서 육상 또는 해상 교통 수단으로만 미국에 입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권 카드는 정규 책자형 여권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여권 카드는 모든 육로 국경 및 항구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반구 여행 정책(WHTI) 규정을 준수하는 서류입니다.



## 군인 신분증

현역으로 미군에 복무 중인 여행자는 공식 출장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여권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군인 신분증은 2020년 7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신분증은 카드 앞면에 표시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REQUEST AND AUTHORIZATION FOR TRAVEL OF DOD PERSONNEL			DATE OF REQUEST (if requested)
<small>Advances and Travel Regulation (TR), Chapter 2                      About Request for Advance and Advance Request Form</small>			
<b>REQUEST FOR OFFICIAL TRAVEL</b>			
1.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13. POSITION TITLE AND ORGANIZATION	
3. LOCATION OF PERMANENT DUTY STATION (PCS)		4. ORGANIZATIONAL ELEMENT	
5. TYPE OF DUTY		6. DUTY STATION NUMBER (from the card)	
7. TRAVELER		8. TRAVEL DATE (month/year)	
9. TRAVEL PURPOSE (check one)			
10. TRAVEL TYPE (check one)			
1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2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3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4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5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6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7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8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1.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2.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3.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4.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5.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6.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7.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8.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99.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100. TRAVEL CLASSIFICATION (check one)			

PRIVACY ACT STATEMENT	
<small>REGULATIONS: 48 C.F.R. 101-11.612, and 48 C.F.R. 101-11.613</small>	
<small>PRINCIPAL PURPOSES: Used for processing, approving, and accounting for official travel.</small>	
<small>ROUTINE USES: None.</small>	
<small>DISCLOSURE: Voluntary; however, failure to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may delay or preclude timely authorization of your travel request.</small>	
<small>18. REMARKS: Comment (for use only fo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ravel request, extension, approval fees, etc.)</small>	

군 명령서(양식 DD-1610)

참고: 일부 유효한 군 출장 명령서는 양식 DD 1610에 없습니다.

## 미국 외항 선원증

미국 외항 선원증은 소지자가 해당 문서에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선박에서 하선하거나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여행을 한다면 미국 여권 대신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장 전용 여행'.



## 강화된 운전 면허증



## 강화된 부족 카드



강화된 운전 면허증과 강화 부족 카드는 미국 국적 및 신분 증빙입니다. 이 서류는 WHTI의 여러 여행 규정 준수를 위해 여러 주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와의 지상 국경을 통과할 경우 여권 대신 강화된 운전 면허증과 강화된 부족 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여행객 증명 카드

### 글로벌 엔트리 카드

글로벌 엔트리는 사전 승인된 저위험 여행객들이 글로벌 엔트리 키오스크가 있는 선별된 공항으로 미합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프로그램입니다.



### SENTRI 카드

신속한 여행객 검사를 위한 보안 전자 네트워크(SENTRI)는 사전 승인된 저위험 여행객들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CBP 프로그램입니다. 가입자들은 남부 지상 국경소에 있는 전용 우선 대기 통로로 미합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NEXUS 카드

NEXUS 프로그램은 사전 신원 조회된 여행객들이 미합중국 및 캐나다를 입국할 때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캐나다를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NEXUS 키오스크 및 캐나다 사전 통관 공항들을 통해 미합중국으로 입국할 때 글로벌 엔트리 키오스크로 지정된 북부 국경 입국장의 전용 처리 통과선을 사용합니다. 또한, NEXUS 가입자들은 해상 보고 위치에서 신속히 통과됩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FAST)은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미합중국으로 입국하려는 기존의 저위험 상용차들을 위한 상용 통관 프로그램입니다(사진 없음).





## 조치 통지서

기간이 만료된 거주자 카드(2년 만기)를 소지한 조건부 거주자는 조치 통지서(양식 I-797)를 소지하고 있으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지정된 기간(보편적으로 1년) 동안 카드의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양식의 '수령일'은 카드의 유효기간과 무관합니다. 여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orm I-797C, Notice of Action

**THIS NOTICE DOES NOT GRANT ANY IMMIGRATION STATUS OR BENEFIT.**

Applicant's Name	Applicant's Address	Applicant's Phone Number	Applicant's Email Address
YEST V, YEST V	1234 Main St, Anytown, CA 90210	(555) 123-4567	YEST.V@EXAMPLE.COM
Applicant's Date of Birth	Applicant's Sex	Applicant's Height	Applicant's Weight
17 AUG 1998	M	5'10"	150 lbs
Applicant's Date of Issuance	Applicant's Date of Expiration	Applicant's Category	Applicant's Status
01/01/2018	01/01/2020	C-1	Permanent Resident

This document is intended to be used by the applicant to present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t is not a passport and does not grant any immigration status or benefit. If you have not heard from us within 120 days, you may contact our office.

**UNITED STATES OF AMERICA  
PERMANENT RESIDENT**

**SPECIMEN**

Serial Number: YEST V

Category: C-1

Country of Birth: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ate of Birth: 17 AUG 1998

Sex: M

Card Expires: 01/01/2020

Resident Since: 01/01/2018

Please see the official instructions at the back. The holder will receive a copy of the card by mail.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O. BOX 260000  
WASHINGTON, DC 20526-0000  
National Customer Relationship Center: 1-800-375-5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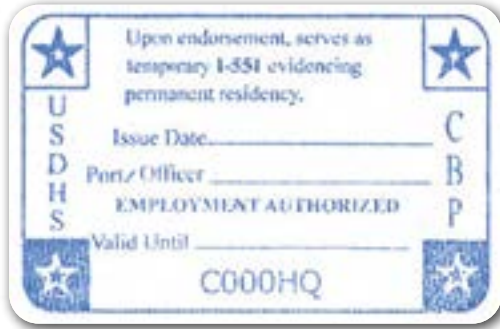
Please see the back of this notice for important information.

DHS 2017년판

참고: 양식 I-797의 모양과 데이터 요소는 미국 이민국의 발급 사무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식 I-797에 대해 잘 모를 경우 탑승 전에 RCLG에 문의하십시오.

## ADIT 스탬프

합법적 영주권자(LPR)는 유효한 외국인 서류 확인 및 통신(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DIT) 스탬프가 있으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ADIT 스탬프는 거주자 신분의 임시적 증명으로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제공됩니다. 스탬프는 여권 또는 양식 I-94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스탬프는 CBP 또는 USCIS에 의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CBP 판



USCIS 판

## 이민 비자

이민 비자는 국무부에 의해 발급되고 이민자의 여권 안에 부착됩니다.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이민 비자는 입국 확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재입국 서류가 됩니다.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승인 시 1년 동안 영주권을 증명하는 임시 I-551 역할을 합니다)라는 문구는 비자의 기계 판독 범위 바로 위에 인쇄됩니다. 이 서류는 여행 및 취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ADIT 스탬프 대응입니다.

승인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 재입국 허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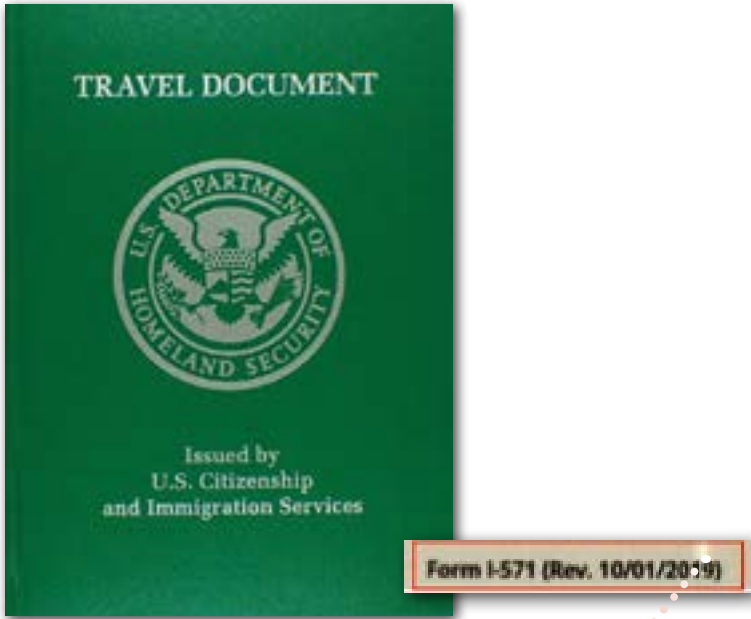
합법적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없이 재입국 허가서(양식 I-327)를 소지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제시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것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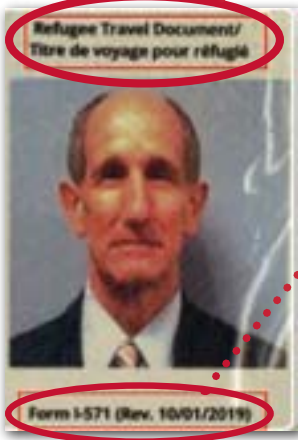
2019년판

## 난민 여행 증명서

난민 여행 증명(양식 I-571)은 미국 출입국 시에 유효한 서류입니다.



Refugee Travel Document/  
Titre de voyage pour réfugié



2019 년판

## 새로운 양식 I-512T

2022년 7월 1일부터 미국 이민국(USCIS)은 여행 허가를 요청하는 임시 보호 자격(TPS) 수혜자를 위해 새로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증명서는 I-512T로 명명되었고, 외국인에 의한 미합중국으로의 여행 허가증이며 TPS 수혜자가 해외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미국 입국 장소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I-512T | AUTHORIZATION FOR TRAVEL BY A NONCITIZEN TO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1. Personal Information**

Full Nam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Sex
Country of Birth	Place of Birth	Country of Birth
Current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4)	Country of Current Residence	Country of Birth

**2. I-512T IS A TRAVEL AUTHORITY**  
 This form is a travel authority for a non-citizen who is a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beneficiary. It is not a passport or a visa. It is a travel document that allows the holder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the TPS program. The holder must be a TPS beneficiary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form. The holder must be a TPS beneficiary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form. The holder must be a TPS beneficiary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form.

**3. I-512T IS NOT A TRAVEL AUTHORITY**  
 This form is not a travel authority for a non-citizen who is a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beneficiary. It is not a passport or a visa. It is a travel document that allows the holder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the TPS program. The holder must be a TPS beneficiary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form. The holder must be a TPS beneficiary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form. The holder must be a TPS beneficiary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form.

**4. Signature**

**5. Signature of Authorizing Official**  
 (Name, Title, Date, Signature)

**PHOTO OF BENEFICIARY**

**FORM I-512T (REV. 06/24/22)**



## 취업 허가증(EAD)

취업 허가증(양식 I-766)은 미국의 합법적 임시 거주자나 특정 비이민자에게 발급되어 그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료되지 않은 EAD 카드 앞면에 “VALID FOR RE-ENTRY TO THE U.S.”(미국으로 재입국이 유효함)이 표시된 경우, 항공사는 이러한 서류를 제시하는 승객들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VALID FOR RE-ENTRY TO THE U.S.”(미국으로 재입국이 유효함)이 표시된 EAD 카드는 독립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VALID FOR REENTRY TO U.S.**



**NOT VALID FOR REENTRY TO U.S.**

참고: 모든 EAD가 여행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 전면에 “NOT VALID FOR RE-ENTRY TO THE U.S.”(미국 재입국에 유효하지 않음)이라 명시된 경우라도 이 안내서에 명시된 유효한 미국 입국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에서는 해당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습니다.



## 취업 허가증

‘콤보 카드’(양식 I-766)는 임시 입국 허가(42페이지, 양식 I-512)와 미국 내 취업 허가가 결합된 것입니다. 만료되지 않은 EAD 카드의 앞면에 “I-512 임시 입국 허가용으로 사용됨(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 표시된 경우, 항공사는 이 서류를 제시하는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I-512 임시 입국 허가용으로 사용됨(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 표시된 EAD 카드는 독립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임시 입국 허가서

임시 입국 허가서(양식 I-512)를 소지한 여행자는 미국 입국 또는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서류의 만료일 전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임시 입국 허가서에 어떤 스탬프가 찍히더라도 인쇄된 일자를 연장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I-512,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 Into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ame of Alien (Print) (Last, First, Middle, Suffix)		Date
SHAKY THE BEAR		JULY 1, 2013
Date of Birth (MM/DD/YYYY)		File Number
NONE T. 1984		4800000 WATER1111111
U.S. Address (Type, number and street name, apartment and street, P.O. or street, city, state, ZIP code)		
77 BUNGLE ROAD GARDINGEN, VERMONT, 05031		

Presentations of the attached duplicate will authorize a transportation line to accept the named alien on board for travel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having under section 27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but for bringing an alien who does not have a visa.

Presentations of the original of this document prior to June 30, 2016 will authorize an immigration officer at a port of entry to the United States to permit the named alien, unless otherwise appears herein, to enter the United States.

or an alien paroled pursuant to section 212(d)(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UTHORIZATION:** The holder of this authorization has been granted T nonimmigrant status pursuant to Section 21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he holder departed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for urgent humanitarian reasons and intends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to resume status pursuant to the grant of T nonimmigrant status. Contingent upon his or her gaining their eligibility, the holder of this document shall be per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authority of the Center Director, St Albans, Vermont. **VALID FOR MULTIPLE APPLICATIONS FOR PAROLE INTO THE UNITED STATES.**

**NOTICE TO APPLICANT:** Presentations of this authorization will permit you to receive status pursuant to your grant of T nonimmigrant status upon you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If your T nonimmigrant status is revoked, you may be subject to removal proceedings under 238(a)(1) or 240 of the Act. If, after April 1, 1997, you were volunt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180 days, you may be found inadmissible under section 238(a)(2)(A) of the Act while you remain in the United States. If you are found inadmissible, you will need to qualify for a waiver of inadmissibility for any subsequent request for permanent resident status.

  
 Louis B. Zuckerman, Center Director

Vermont Service Center  
 Authorizing Official

  
 Name tag

**ARRIVAL STAMP**

Form I-512, Rev. 02/2007

참고: 양식 I-512의 모양과 데이터 요소는 발급 사무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행 증명서

여행 증명서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영주권자 또는 난민에게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증명서의 소지자가 만료일 이전에 여행한다면 입국하기에 충분합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I-797E, Transportation Letter

---

**AUTHORIZATION TO TRANSPORT ALIEN TO THE UNITED STATES**

Date Issued: Jun 1, 2014  
This Document Valid Until: Jul 1, 2014

Name ofBearer: \_\_\_\_\_  
Date/Place of Birth: \_\_\_\_\_  
Bearer's A-Number: \_\_\_\_\_  
Gender: Male  
Passport Number: \_\_\_\_\_

**TO: TRANSPORTATION COMPANY**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 AT PORT-OF-ENTRY**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as approved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for the above named alien under Section 207(c) or Section 209(b)(1)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Presentation of this document will authorize a transportation line to accept the named bearer, whose photograph is attached, on board for travel to the United States on or before Jul 1, 2014 without liability under Section 275(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or transporting an alien without a visa to the United States.

The bearer whose photograph appears below has been instructed to present the original of this letter to the Transportation Company on which travel to the United States is intended. The above-named person has also been instructed to present the duplicate of this letter in a sealed envelope to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 at the port of entry used, where the sealed envelope should be opened.

Issued by: Roger Thornhill  
Field Office Director  
Beijing  
Telephone: 86-256-5224-1852



Form I-797E (01/12/12)

참고: 모양과 데이터 요소는 발급 사무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미국 국무부, 이민세관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또는 이민국에 의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국경 통과 카드

국경 통과 카드(BCC)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하며,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로 B1/B2 여행자 비자와 국경 통과 카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국경 통과 카드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멕시코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발급됩니다.









# 제4부:

비자분류

## 제 4 부

## 제4부: 비자분류

A-1	공직자 및 직계 가족
A-2	공직자 및 직계 가족
A-3	A-1 또는 A-2 소지자의 고용인
B-1	출장 목적의 임시 방문자
B-2	휴가 목적의 임시 방문자
C-1	미국 경유
C1/D	경유 및 승무원 통합 비자
C-2	UN에 가기 위한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공직자, 직계 가족 또는 고용인
CW-1	북마리아나 제도 경유 노동자
CW-2	CW-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D-1	동일한 도착 선박으로 출발하는 선원
D-2	다른 선박 또는 운송 수단으로 출발하는 선원
E-1	무역인, 배우자 및 자녀
E-2	투자자, 배우자 및 자녀
E-2C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 배우자 또는 자녀
E-3	전문직 호주 국민
E-3D	E-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R	귀환하는 E-3 소지자
F-1	학생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3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민 통학생
G-1	국제기구의 대표자 및 고용인
G-2	국제기구의 대표자 및 고용인
G-3	국제기구의 대표자 및 고용인
G-4	국제기구의 대표자 및 고용인
G-5	G1-4 소지자의 고용인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
H-1B	전문 직업
H-1B1	칠레 및 싱가포르에서 온 자유 무역 전문직
H-1C	간호사
H-2A	임시 농업 노동자
H-2B	숙련 또는 비숙련 임시 농업 노동자
H-2R	귀환하는 H-2B 소지자
H-3	산업연수생
H-4	H-1 에서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I	외신 대표 및 직계 가족
J-1	교환 방문자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2	K-1 소지자의 자녀
K-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K-4	K-3 소지자의 자녀

L-1	사내 전근자
L-1B	전문 지식을 가진 사내 전근자
L-2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	직업학생 또는 기타 비(非) 학업학생
M-2	M-1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3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민 통학생
N-8	특별 이민자로분류된 외국인의 부모
N-9	N-8 또는 특별 이민자의 자녀
NATO-1	대표자 및 가족
NATO-2	대표자 및 가족
NATO-3	대표자 및 가족
NATO-4	대표자 및 가족
NATO-5	NATO 1-4의 고용인
NATO-6	NATO 1-4의 고용인
NATO-7	NATO 1-6의 고용인 또는 직계 가족
O-1	특별 재능
O-2	O-1의 동반자 또는 보조자
O-3	O-1에서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	개인 또는 단체 운동선수, 예술단체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속한 예술가 및 연예인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에 속한 예술가 및 연예인
P-4	P-1에서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Q-1	국제 문화 교류
Q-2	아일랜드인 평화 프로세스 문화
Q-3	Q-1에서 Q-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R-1	종교인
R-2	R-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S	특별 비(非) 이민자
T	특별 비(非) 이민자
U	특별 비(非) 이민자
TN	캐나다 및 멕시코, NAFTA를 위한 무역 비자
TD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V-1	영주권자의 배우자
V-2	V-1소지자의 자녀
V-3	V-1 또는 V-2 소지자의 파생 자녀
WB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사업 방문자
WT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여행 방문자
YY	여행 증명서 대신 발급된 국무부 비자
ZZ	여행 증명서 대신 발급된 국무부 비자
PARCIS	미합중국 이민국 임시 입국 허가를 위한 국제 운영소

# 제5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규정 위반  
행위 일람표



## 제5부: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벌금 부과 조항

아래 표는 INA에 따라 CBP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INA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환경	미국연방 법집 및 미국연방규정집	INA 조항	상황	벌금 (최고액)	경감
항공사 선박	8 U.S.C. 1221 8 C.F.R. 231	231(a) 231(b)	도착 시 I-94가 없거나 잘못된 유형의 I-94.	\$1,436	아니오
			출발 시 미제출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I-94.	\$1,436	아니오
항공	8 U.S.C. 1224 8 C.F.R. 234	234	항공기 도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거나 항공기를 비인가 장소에 착륙한 경우.	\$3,901	예
항공/선박	8 U.S.C. 1253***	243(c)	명령에 따라 승객을 내리지 않은 경우[참조 241(d)(3)].	\$3,289	아니오
항공/선박			명령에 따라 승객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참조 241(e)].	\$3,289	아니오
항공/선박			명령에 따라 승객을 다시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참조 241(d)(1)].	\$3,289	아니오
선박			밀항자를 조사 때까지 억류하지 않은 경우[참조 241(d)(2)].	\$3,289	아니오
선박			명령에 따라 밀항자를 내리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참조 241(e)].	\$3,289	아니오
선박			밀항자를 내리지 않은 경우[참조 241(d)(2)(C)].	\$8,224	아니오
선박	8 U.S.C. 1281	251(a)	도착 시 전체 외국인 승무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90	아니오
선박	C.F.R. 251	251(b)	불법으로 착륙한 외국인 승무원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90	아니오
선박		251(c)	출발 시 전체 외국인 승무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90	아니오
선박	8 U.S.C. 1288 8 C.F.R. 258	251(d)	외국인 승무원이 허가 받지 않은 항만 작업을 수행한 경우[참조 258].	\$9,753	아니오

환경	미국연방 법전 및 미국연방규정집	INA 조항	상황	벌금 (최고액)	경 감
항공/선박	8 U.S.C. 1284	254(a) (1)	외국인 승무원을 조사 전에 억류하지 않은 경우.	\$5,851	예
항공/선박		254(a) (2)	명령에 따라 외국인 승무원을 억류하지 않은 경우.	\$5,851	예
항공/선박		254(a) (3)	명령에 따라 외국인 승무원을 내리지 않은 경우. (최대 경감 비용 \$975.)	\$5,851	예
항공/선박	8 U.S.C. 1285	255	특정 질환이 있는 승무원을 고용한 여객선	\$1,951	예
항공/선박	8 U.S.C. 1286	256	외국인 승무원을 부당하게 하선시킨 경우. (최대 경감 비용 \$2,925.)	\$5,851	예
항공/선박	8 U.S.C. 1287	257	이민법 회피를 위해 외국인을 승무원으로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	\$19,505	아니요
항공/선박	8 U.S.C. 1288	258	외국인 선원에 의한 무허가 항만 작업을 위한 Vsls의 금지.	금지	예
항공/선박	8 U.S.C. 1321 8 C.F.R. 271	271	외국인의 무허가 착륙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5,851	예
항공/선박	8 U.S.C. 1322	272	건강 관련 이유로 인해 탑승 거부 대상인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경우.	\$5,851	아니요
항공/선박	8 U.S.C. 1323 8 C.F.R. 273	273(a) (1)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는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경우.	\$5,851	예
항공/선박		273(a) (2)	외국인을 탑승시키는 조건으로 수수료, 예치금 또는 대가를 받은 경우.  (경감 비용 불허)	\$5,851	아니요
항공/선박			2004년 10월 26일 이후 유효한 기계 판독 가능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	\$5,851	예



환경	미국연방 법전 및 미국연방규정집	INA 조항	상황	벌금 (최고액)	경감
항공/선박	8 U.S.C. 1323 8 C.F.R. 273	273(a) (1) 273(a) (2)	2005년 10월 26일 이후 MRP에 디지털 사진이 없는 VWP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	\$5,851	예
항공/선박			2006년 10월 26일 이후 내장된 생체 정보 칩을 포함한 MRP가 없는 VWP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	\$5,851	예
항공/선박			ESTA 승인이 없는 VWP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	\$5,851	예

\* 벌금 및 범칙금은 1990년 연방 민사 범칙금 인플레이션 조정법에 의해 개정된 1996년 채권추심 개선법 및 2015년 연방 민사 범칙금 인플레이션 조정 개선법의 규정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미합중국 국토안보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민사 범칙금을 2021년 10월 18일부터 조정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조정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사 범칙금 조정에 따라 연방 등록 고시(제86권, 제198호)에 발표되었습니다.

\*\* 2002년 강화된 국경 보안 및 비자 개혁법 402조는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본 범칙금을 위반 건당 \$1,000로 인상했습니다.

\*\*\* 참고: INA 243조(c)에 따른 범칙금은 8 U.S.C. 1231(INA 241조)에서 외국인 구금 및 추방과 관련된 특정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제6부:

신속한 여행 서류 참조 차트



## 항공편 입국 관련 필수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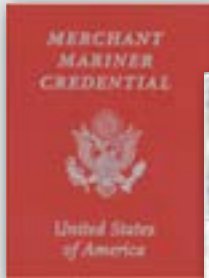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군인 신분증  
(공식 여행 명령서와 함께)



외항 선원증



NEXUS 카드  
(캐나다 공항을 거치는 경우에만)

## 항공편 출국 관련 필수 서류

미국 시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계속).



긴급 여권



## 항공편 입국 관련 필수 서류

캐나다 및 버뮤다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영국 여권 안쪽에 있는 이 스탬프는 버뮤다 국적을 나타냅니다.



NEXUS 카드  
(캐나다 공항을 거치는 경우에만)



임시 입국 허가서

## 항공편 입국 관련 필수 서류

멕시코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및 비자



여권 및 국경 통과 카드



임시 입국 허가서



만료되지 않은 EAD



## 항공편 입국 관련 필수 서류

영주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ADIT 스탬프



DHS 여행 서류



이민 비자



영주권자 카드



링컨 보딩 포일(Lincoln Boarding Foil)



여행 증명서

## 항공편 입국 관련 필수 서류

VWP 적용 여행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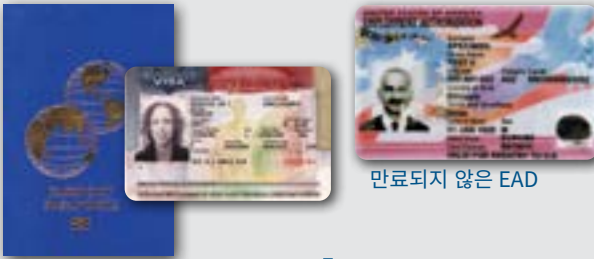
반드시 전자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 항공편 입국 관련 필수 서류

## VWP 적용 여행자(계속):



기타의 모든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및 비자

만료되지 않은 EAD

**또는**



임시 입국 허가서



양식 I-512T

## 항공편 출국 관련 필수 서류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NEXUS 카드



군인 신분증  
(공식 출장 명령서 포함)



외항 선원증

## 항공편 출국 관련 필수 서류

영주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카드



이민 비자



DHS 여행 서류



여권



ADIT 스탬프

## 항공편 출국 관련 필수 서류

캐나다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NEXUS 카드



여권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긴급 여행 증명 또는 추방 명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단수 여행증



긴급 여행 증명

## 항공편 출국 관련 필수 서류

미합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입출국 시 부적합한 문서들의 예시입니다.

- 운전면허증
- 출생증명서
- 미국 여권 카드
- 시민권 증명서 또는 카드
- 귀화 증명서
- 해외 거주 멕시코인 신분증
- 신분증
- 국가 신분증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CBP 지역 항공사 연락 그룹에 문의하십시오.

## 육상 및 해상 교통편 이용 시 필수 서류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미국 여권 카드



SENTRI 카드



NEXUS 카드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강화된 운전면허증



부족 카드



글로벌 엔트리 카드



FAST 카드



## 육상 및 해상 교통편 이용 시 필수 서류

캐나다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NEXUS 카드



여권



SENTRI 카드/FAST 카드



원주민 북부 지역 발전 카드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강화된 운전면허증



# 제7부:

승객 정보 사전 확인 시스템



승객 정보 사전 확인 시스템(APIIS)은 1989년 미국 정부에서 항공 업계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의무적인 APIS 요건은 2001년 항공교통 보안법과 2002년 강화된 국경 보안 및 비자 개혁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권장사항에 따른 조치로, 국회에서는 2004년의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IRTPA)에 따라 DHS에서 항공 및 해상 교통편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접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APIS 최종 규칙

2005년 4월 7일에 CBP는 APIS 최종 규칙을 공개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미합중국으로 입출국하는 민항기에 대한 승객 및 승무원 API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규칙은 각 여행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서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구성 요소들을 확립하였습니다. 필수 데이터 구성 요소들의 다수는 여권의 기계 판독 가능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 APIS 출발 전 및 대화식 APIS 신속 질의

2007년 8월 23일에, CBP는 2008년 2월 19일을 시행일로 하는 APIS 출발 전 최종 규칙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며 민항기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APIS 전송

항공사에서는 출발 전 APIS 정보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출발 30분 전에 항공사에서 모든 탑승객 명단을 전송해야 하는 대화식 또는 비대화식 형태의 APIS 일괄 전송 방식.
- 탑승 전 각 승객이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실시간으로 항공사가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APIS 빠른 쿼리 모드.

외국 항구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선박들에 대한 필수 요건은 도착하기 전 24시간에서 96시간 사이에 승객 및 승무원의 도착 명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미합중국을 출발하는 선박 항공사들은 출발 60분 전에 APIS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 APIS 서류 확인

CBP 서류 확인 프로그램은 출발 전 API 데이터를 CBP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 정보에 비교합니다. 서류 확인을 통해, CBP는 APIS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존의 양방향 소통을 이용해 항공사에 기록에 있는 데이터 및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여행에 유효한지 알립니다. 이는 추가 보안을 더하고 탑승 수속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여행객의 이름, 생년월일과 서류 발급 국가 및 번호와 같은 데이터 구성요소들은 반드시 올바르게 완전해야 합니다. 이는 여권의 기계적 판독이 가능한 범위에 담긴 데이터를 전송하고 미국 비자 정보 또는 보조 문서 란에 있는 영주권 카드를 전송하는 것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자발적이고 향후 의무화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귀사의 APIS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제8부:

인신매매





##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인신매매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성인과 아이들이 강제 노동 상태 및 성매매로 밀거래됩니다.

인신매매는 누군가를 폭력의 사용, 사기 또는 강요하여 강제 노동, 가내 노역 또는 성매매로 착취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연방법에 의해 폭력, 사기 또는 강요에 상관없이 성매매에 가담한 모든 미성년자(18세 미만)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입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그 어떤 연령, 국적, 성별 또는 이민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그들의 범죄를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미합중국으로 데려오거나 그들을 내부적으로 전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민항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요원들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접하며 의심스러운 인신매매를 식별할 기회가 있습니다. 블루 라이트닝 이니셔티브(Blue Lightning Initiative)는 국토안보부의 블루 캠페인 중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CBP와 교통부가 이끄는 공동 계획입니다. 이니셔티브는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연방 당국에 통지하기 위해 미국 항공 업계 직원들을 교육합니다.

인신매매의 징후는 많습니다. 아래는 귀하가 마주칠 수 있는 네 가지 징후입니다:

- 본인의 여행 및 신원 확인 서류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사람
-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이 없는 사람
- 본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타당한 수단 또는 지식이 없는 사람
-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이 여행객

지상 또는 기내에서, 미국 국제선 또는 국내선에서 인신매매 징후를 목격한다면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DHS 제보 라인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 24시간 언제든지 866-347-2423(미국 및 캐나다에서 무료)으로 전화
- 24시간 언제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802-872-6199(요금 적용)로 전화
- 즉시 제보하기 위해 귀항공사의 방침을 따르십시오. 이는 운항 정보 교신시스템 또는 국내 사건 네트워크를 통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상황 시 911 또는 현지 법 집행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인신매매 용의자** 또는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맞서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불필요한 이목을 끌지 마십시오. 인신매매 용의자 또는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귀하의 의심에 대해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목격한 것을 신고하십시오.

**귀하의** 제보를 'BLI tip'으로 신고하십시오.

블루 라이트닝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cbp.gov/border-security/human-trafficking/blue-lightning](http://www.cbp.gov/border-security/human-trafficking/blue-lightning)을 방문하십시오.

귀사가 블루 라이트닝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싶다면 [bluecampaign@hq.dhs.gov](mailto:bluecampaign@hq.dhs.gov)에 문의하십시오.

DHS 블루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dhs.gov/blue-campaign](http://www.dhs.gov/blue-campaign)을 방문하십시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Washington, DC 20229

*[www.cbp.gov](http://www.cbp.gov)*

CBP Publication 1309-0323  
Korean